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1
----------	-----

제출년월일 : 1992. 8. .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1. 제 안 사 유

- 1991년 1월 29일 속초시수도급수조례 (제1365호) 개정이래 업종의 과다한 세분및 업태규정이 모호하고 새로운 업태발생으로 민원야기가 많은바, 이를 예방코자 세분된 업종의 통합, 축소조정및 업종별 해당 업태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이해와 상수도행정의 능률을 높이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업종별 요율표 일부조정 (안 제 26 조 별표 2 참조)
- 업종구분표 통합및 변경 (안 제 27 조 별표 3 참조)

3. 참 고 사 항

- 시정조정위원회 부의결과 _____ 별 첨
- 입법예고 _____ 별 첨
- 상수도 요금율 조정안 (강원도 도개 30340 - 0472) ——— 별 첨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수도급수조례증개정조례(안)

속초시수도급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 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업 종 별 요 율 표 (안)

현			정		
업 종 별	단 계 별	금 액	업 종 별	단 계 별	금 액
가 정 1 종	0 톤 ~ 30 톤	1,500	가 정 용	0 톤 ~ 10 톤	1,350
	31 톤 이상	300		11 톤 ~ 30 톤	200
가 정 2 종	0 톤 ~ 10 톤	1,350		31 톤 ~ 50 톤	220
	11 톤 ~ 30 톤	200		51 톤 이상	230
	31 톤 ~ 50 톤	220			
	51 톤 이상	230			
영 업 1 종	0 톤 ~ 200 톤	45,000	영 업 1 종	0 톤 ~ 20 톤	6,500
	201 톤 이상	300		21 톤 ~ 50 톤	450
영 업 2 종	0 톤 ~ 20 톤	6,500		51 톤 ~ 100 톤	480
	21 톤 ~ 50 톤	450		101 톤 ~ 300 톤	520
	51 톤 ~ 100 톤	480		301 톤 이상	550
	101 톤 이상	520			
영 업 3 종	0 톤 ~ 30 톤	10,200	영 업 2 종	0 톤 ~ 30 톤	10,200
	31 톤 ~ 50 톤	470		31 톤 ~ 50 톤	470
	51 톤 ~ 100 톤	610		51 톤 ~ 100 톤	620
	101 톤 이상	680		101 톤 이상	690
임 시 용	톤 당	800			
육 탕 1 종	0 톤 ~ 200 톤	61,450	육 탕 1 종	0 톤 ~ 200 톤	61,450
	201 톤 ~ 300 톤	420		201 톤 ~ 300 톤	420
	301 톤 ~ 500 톤	470		301 톤 ~ 500 톤	470
	501 톤 이상	630		501 톤 이상	630
육 탕 2 종	0 톤 ~ 200 톤	81,700	육 탕 2 종	0 톤 ~ 200 톤	81,700
	201 톤 ~ 300 톤	700		201 톤 ~ 300 톤	700
	301 톤 ~ 500 톤	960		301 톤 ~ 500 톤	960
	501 톤 이상	1,200		501 톤 이상	1,200
공 공 용	0 톤 ~ 30 톤	7,500	공 공 용	0 톤 ~ 30 톤	7,500
	31 톤 이상	410		31 톤 이상	410
전용공업용	톤 당	300	전용공업용	톤 당	300

현행		조정후	
업종	업종구분	업종	업종구분
가정 1	· 5호 이상의 가정으로 급수하는것 (공동수도)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점 등의 소매업, 10㎡ 미만의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
가정 2	· 전용전에 의하여 가사에 사용하 는 급수(메인계량기를 이용하여 세 대별 전용전을 설치 사용하는 아파 트, 연립주택 포함) · 담배소매업, 연탄소매업, 양곡소매 업, 만화가게, 문방구, 지물포, 철물점 복덕방, 대서소(일반행정)기타 3평 미만의 구멍가게 및 이와 유사한업소 · 5인미만의 사무실		
영업 1	· 지물업, 제혁업, 제사업, 제당업, 유 지업, 조미료업, 조선업, 제분업, 제면 · 합성섬유제조가공업, 의류제조업 (수공업제외), 고무제품제조가공업, 금속제품제조가공업, 화학제품제조 가공업, 산업기계제품제조가공업, 기타 유사한 제품의 제조가공업.	영업 1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은 업소 · 사설 소화전
영업 2	· 방아간, 대중음식점(탕류, 면류, 도 시락점등을 조리 판매하고 간단한 주류를판매하는 영업동과인삼찜집) 어채류도산매, 주류도산매, 슈퍼마켓 두부공장, 콩나물공장, 잡화상, 각종 식료품대리점, 기타 타업종에서 명기되지않은 식료품 도산매. · 제화및 신발류판매업, 유리및유리 제품판매, 수예점(편물, 표구점포함) 양복점, 가구제조 및 판매업, 고물상 (각종수리점포함)서점, 유류소매업, 기타 타업종에서 명기되지 않은 도산매업. · 의원(한의원, 침술원, 조산원포함) 병원(의료법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과 병원), 장의사, 약국및약방, 가족 병원, 사무실(5인이상). · 기원, 당구장, 탁구장, 전자오락실, 사설체육관, 사설스케이트장, 염색소 세탁소, 사설도축장, 연탄공장, 부력 등 시멘트제조업, 인쇄소, 사진관(디 피점, 현상소포함)이.미용업, 하숙집 여인숙, 부화장, 양계장. · 사설소화용급수전, 선박용급수, 원예점(식목업등).		

현행		조정후	
업종	업종구분	업종	업종구분
영업 3	· 유흥음식점(요정, 싸롱, 극장식당, 바, 카바레, 나이트클럽등) 다방(음악감상실포함) 제과점(빙과및제빵시설겸비업소), 청량음료제조업, 제빙냉동업, 주류제조업, 정육점, 백화점(종합상가포함), 전자제품판매(피아노등 악기판매포함), 귀금속판매. · 여관, 호텔, 금융기관(보험회사, 신용금고, 전당포포함. 다만 새마을금고는 제외), 음식점, 사설학원, 극장, 골프장, 볼링장, 주유소, 세차장, 자동차정비업.	영업 2	①식품접객업 ②공연장 ③숙박업(여인숙제외) ④유기장, 노래방 ⑤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소매업 ⑥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및관광업 ⑦음식장 ⑧사설학원 ⑨사진현상소 ⑩양조장 ⑪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⑫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제외) ⑬단기급수목적으로 임시개설한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입주전까지,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 요율적용) ⑭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급수 ⑮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⑯제빙, 냉동, 냉장업 ⑰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체.
임시용	· 공사기타 일반적으로 급수하는것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중인 건축물용 다만 입주전까지에 한함.		
욕탕 1	· 대중탕, 한증탕, 비영업풀장.	욕탕 1	· 대중탕, 한증탕, 비영업풀장.
욕탕 2	· 사우나탕, 터키탕, 가족탕, 독탕, 영업용풀장.	욕탕 2	· 사우나탕, 터키탕, 가족탕, 독탕, 영업용풀장.
공공용	· 관공서, 학교, 병원, 고아원, 탁아소 학원, 교회, 사찰, 방송국, 신문사, 국영기업체, 정당.	공공용	· 관공서, 학교, 병원, 고아원, 탁아소 학원, 교회, 사찰, 방송국, 신문사, 국영기업체, 정당.
전용공업용	· 공업단지 등의 공업지역에 원수로서 공급하는 수도전.	전용공업용	· 공업단지 등의 공업지역에 원수로서 공급하는 수도전